

2026년도 『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』 공고

관세청은 중소기업이 원산지검증에 대비하여 원산지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「2026년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.

이에 아래와 같이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2026년 2월 2일

관 세 청 장

1. 사업 개요

- (사업명) 2026년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
- (사업기간) 2026년 2월 ~ 6월
- (신청자격)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원산지검증 대비가 필요한 중소기업, 소상공인 * 수출시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기업

【 다음 】

- ①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*

* 공정거래위원회가 매월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고시하는 기업집단

- ② 직전 2년간(24~'25년) 관세청, 농림축산식품부, 산업통상자원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FTA 컨설팅 수혜기업

* 수혜 이력이 있을 경우 기업 선정 이후에도 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음

- ③ 최근 2년간(접수일 기준) 관세 또는 국세 체납 실적이 있는 기업

- (지원내용) 관세청에서 배정한 민간 컨설턴트(관세사*)가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원산지검증 대비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

* 원산지검증대응 「컨설턴트 양성교육」을 이수한 한국관세사회에 가입된 관세사

- 원산지증명서류 작성 및 보관, 원산지검증 절차, 검증 대응 매뉴얼 작성, 모의 검증 실시, FTA-PASS를 활용한 표준질의서 작성, 인증수출자 신청 및 자율 점검 등 원산지검증 대응 관련 사항 지원

(지원금액)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

○ 기업규모(전년도 매출액 기준)에 따라 차등 지원

구 분	적용기준	기업 부담	비 고
I 기업군	전년 매출액 500억원 이하	전액 지원	
II 기업군	전년 매출액 1,000억원 이하	지원금액의 20%	I 기업군제외
III 기업군	전년 매출액 1,500억원 이하	지원금액의 30%	I, II 기업군 제외

※ 단, 전년도 매출액 1,500억원 초과 업체는 지원 불가

2. 신청 및 접수

(신청방법) 컨설팅 희망기업은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[붙임1]와 제출서류를 관세청 FTA 포털*을 통해 관할 사업세관에 신청·제출

* FTA 포털(customs.go.kr/ftaportalkor/main.do) > FTA 기업지원 > 컨설팅 사업 > 2026년 검증 대응 지원사업 > '신청하기' 메뉴 클릭

【 제출서류 】

- (i)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- (ii) 전년도 매출액 확인자료(결산재무제표,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)
- (iii) 정보 활용 동의서[붙임2]
- (iv) 원산지증명서 등을 발급하여 수출한 실적 확인자료(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확인서, 수출신고필증 등)
단, 소상공인은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확인서 제출 요건 면제(수출실적은 필요)
- (v) 그 외 선정 심사에 필요한 관련 서류

○ 신청시 FTA 포털에 게시된 「참여 컨설턴트 명단」에서 희망하는 컨설턴트 지정* 가능

* 신청기업이 컨설턴트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, 사업세관이 업체 소재지, 컨설턴트의 공익 관세사 활동, 원산지관리사 자격 보유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컨설턴트를 해당 기업에 배정

(접수기간) 2026. 2. 9. ~ 2. 20.

※ (유의사항)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
3. 선정 심사 및 통보

- (선정심사 및 통보) 사업세관은 「대상기업 선정기준」[붙임3]에 따라 대상기업을 선정하고 신청기업이 지정한 컨설턴트를 배정[붙임4]
- 신청·접수 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 선정심사 결과를 대상기업 및 배정된 컨설턴트에게 통보[붙임6]

항목	대상기업 선정기준						
자격요건 충족여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(중소기업 여부)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*이 아닐 것 * 공정거래위원회가 매월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고시하는 기업집단(중복수혜 여부) 최근 2년 이내('24~'25년) 관세청, 농림축산식품부, 산업통상자원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FTA 컨설팅 수혜기업이 아닐 것(체납 여부) 최근 2년간(접수일 기준) 관세 또는 국세 체납 실적이 없을 것						
FTA 활용여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기업이 원산지증명서, 원산지확인서, 수출신고필증 등 증빙자료 제출 → 사업세관 확인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최근 3년간('23~'25년) FTA 체약상대국에 원산지증명서 등을 발급하여 수출한 실적이 있는 기업 ※ 소상공인은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확인서 제출 요건 면제 및 우대 선정, <table border="1"><thead><tr><th>우선순위</th><th>선정기준</th></tr></thead><tbody><tr><td>1순위</td><td>대미 수출기업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중소기업</td></tr><tr><td>2순위</td><td>사업세관별 자체 선정기준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소상공인 우대 선정 등</td></tr></tbody></table>	우선순위	선정기준	1순위	대미 수출기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중소기업	2순위	사업세관별 자체 선정기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소상공인 우대 선정 등
우선순위	선정기준						
1순위	대미 수출기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중소기업						
2순위	사업세관별 자체 선정기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소상공인 우대 선정 등						

- (컨설팅 기업수) 사업 참여 컨설턴트는 「컨설팅 기업수 배정기준」[붙임5]에 따라 최대 5개 기업에 대해 컨설팅 가능
- 전년도 컨설팅 평가결과, 공익관세사 활동 실적, 원산지관리사 자격 보유 등에 따라 최대 2개 범위에서 가감 배정 가능

4. 컨설팅 수행

- (컨설팅 착수) 컨설턴트는 배정 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착수 보고 [붙임7]와 컨설팅 유의사항 확인서[붙임8] 및 보안각서[붙임9] 제출

- **기한 내에 착수 보고 하지 않는 경우 컨설팅 평가 시 평가점수 5점 감점 적용**
- 컨설턴트가 컨설팅을 수행하지 못할 사유 등이 발생한 때에는 사업세관은 안 날부터 5일 이내 선정 기업에게 다른 컨설턴트를 배정·통보[붙임6-2]

- (컨설팅 시행 및 완료보고) 컨설턴트는 배정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컨설팅을 완료하여 사업세관에 완료보고서[붙임10]를 제출

- 사업세관은 컨설턴트가 제출기한 내에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최종 평가등급에서 한 단계 낮은 등급 적용
※ 다만,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고 10일이 경과한 경우 최하위 등급 적용
- 컨설턴트는 평일 근무시간 내 1일 1기업에 대해서만 컨설팅 수행

5. 합동 컨설팅 및 만족도 조사

- (합동 컨설팅) 사업세관은 세관직원 및 컨설턴트가 합동으로 업체를 현장 방문하여 합동 컨설팅을 실시

※ 업체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영상시스템 등을 활용

- (만족도 조사) 사업세관은 컨설팅의 충실성, 컨설턴트의 성실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기업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

- 합동 컨설팅을 위해 세관직원이 현장 방문을 요청하는 경우 대상기업과 컨설턴트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만족도 조사 결과는 컨설팅 평가 및 비용 지급에 반영되므로 성실히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6. 컨설팅 평가 및 비용 지급

- (컨설팅 평가) 사업세관은 완료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 컨설팅 평가기준*[붙임11]에 따라 컨설팅 결과를 평가

* 사업 성과(80점), 고객 만족도(20점)에 따라 차등 평가

- **기한 내에 착수 보고 하지 않는 경우 컨설팅 평가 시 평가점수 5점 감점 적용**
- 컨설팅을 수행하지 못할 사유 등이 발생한 때에는 사업세관은 **안 날부터 5일 이내 선정 기업에게 다른 컨설팅사를 배정·통보**[붙임6-2]

※ [참고사항] 자율점검 미이행 기업 대상(자율점검 중단 후 다시 이행하는 경우 포함)으로 컨설팅 기간 중 자율점검 실시 시, 컨설팅 평가 가점 부여

- (컨설팅 평가위원회) 사업세관의 컨설팅 평가에 대해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결과를 확인하고 최종 평가등급 결정
- (비용 지급) 최종 평가금액에서 전년도 매출액에 따른 기업 부담 비용을 제외한 컨설팅 비용을 해당 컨설팅사에게 지급

【 컨설팅 비용 기업 부담률(%) 】

매출액	500억원 이하	1,000억원 이하	1,500억원 이하
부담률	0%	20%	30%

- 컨설팅 완료 후 지급이 원칙, 중도 포기 시에는 지급하지 않음*

* 선정기업의 폐업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컨설팅이 중단되었음을 컨설팅사가 입증할 때에는 해당 시점까지의 지원 실적을 기준으로 비용 지급 가능

7. 기타사항

- (제재 조치) 컨설턴트의 허위 또는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 컨설팅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참여 제한 및 비용 감액 조정

【 세부 내용 】

- 컨설턴트가 컨설팅 완료보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허위로 작성·제출한 경우 향후 3년간 관세청에서 지원하는 모든 사업 참여 배제 및 비용 미지급
- 컨설턴트가 컨설팅 완료보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부실하게 작성·제출한 경우 컨설팅 비용 지급률을 조정(해당 항목 불인정)
- 사업 참여 배제를 통보받은 관세사는 이미 착수되어 진행 중인 컨설팅 이외 신규 착수 및 수행 불가
- 비용 지급 후 관세사의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 지급금 환수 및 향후 3년간 관세청에서 지원하는 모든 사업 참여 배제

8. 신청 세관 및 문의처

- (사업총괄)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담당자(042-481-1105)
- (사업시행) 서울·부산·인천·대구·광주·평택세관

사업세관	부서명	전화번호	E-mail
서울본부세관	수출입기업지원센터	02-510-1378	seoulsupport@korea.kr
부산본부세관	수출입기업지원센터	051-620-6957	busanfta@korea.kr
인천본부세관	수출입기업지원센터	032-452-3639	ftaic@korea.kr
대구본부세관	수출입기업지원센터	053-230-5182	daeguyesfta@korea.kr
광주본부세관	수출입기업지원센터	062-975-8196	ftafta071@korea.kr
평택직할세관	통관총괄과	031-8054-7046	ptfta@korea.kr

※ [참고사항] '25년부터 평택세관에서 중부권(대전광역시, 충청남·북도) 추가 관할

※ 불임자료 목록

불임#	자료명	페이지
1	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	8
2	정보 활용 동의서	9
3	대상기업 선정기준	10
4	컨설팅 배정기준	11
5	컨설팅 기업수 배정기준	11
6	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선정 통보서	12
6-2	컨설팅 재배정 통보서	13
7	착수보고서	14
8	컨설팅 유의사항 확인서	15
9	보안각서	16
10	컨설팅 완료보고서	17
10-2	모의검증 체크리스트	21
10-3	모의검증 보고서(예시)	29
10-4	교육일지(예시)	31
11	컨설팅 평가기준	32

[붙임1]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

2026년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

1. 신청기업 사항			
①기업명	②대표자명		
③사업자등록번호	④업종 · 업태		
⑤사업장 주소			
⑥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여부 (공정위 최근 공고 확인)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없음		⑦전년도 매출액 ⑧상시 근로자수 (전년도 매출액 없는 경우)
⑨컨설팅 비용부담	최대 200만원 중 자부담 <input type="checkbox"/> 0% <input type="checkbox"/> 20% <input type="checkbox"/> 30% * 참고 : 매출액 기준(전년도): 500억원 이하(0%), 1,000억원 이하(20%), 1,500억원 이하(30%)		
⑩주요 수출국	FTA 활용 수출국 FTA 미활용 수출국		
⑪정부 · 지자체 등의 FTA 컨설팅* 수혜 여부	(최근 2년 : 2024~2025년) <input type="checkbox"/> 수혜 받았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아직 받지 못했음 * 관세청, 농식품부, 산업부, 지자체 등의 예산 지원 FTA 컨설팅 사업		
⑫주요 수출품목 (HS 6단위)	1. (HS)	2. (HS)	3. (HS)
⑬최근 3년 FTA 활용 수출실적(US\$)	2025년 2024년 2023년	실적금액(계약서 등 증빙)	
⑭매출 형태	<input type="checkbox"/> 직수출 <input type="checkbox"/> 상사수출 <input type="checkbox"/> 국내공급(로컬수출)		
⑮원산지인증수출자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 업체별 인증수출자 (인증번호:)	<input type="checkbox"/> 품목별 인증수출자 (인증번호:)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
⑯담당자	성명	부서/직위	
	전화번호	휴대전화	
	FAX	E-mail	
2. 컨설팅 희망 관세사 * 신청기업이 희망하는 관세사 기재 (※ '26년도 컨설팅 명단은 관세청 FTA 포털 공지)			
⑰지정 희망 관세사	소속	예) ○○관세사무소, ○○관세법인	
	주소		
	성명	자격증번호	
	전화번호	휴대전화	
	FAX	E-mail	
관세청에서 주관하는 '26년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하며 상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.			
년 월 일			
대표자:		(서명 또는 날인)	
○○세관장 귀하			
직인명판			
<p>※ 구비서류 : 1. 사업자등록증(사본) 2. 전년도 매출액 확인자료 3. 정보 활용 동의서 4.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수출한 실적 확인자료 5. 그 외 선정 심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</p>			

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

□ 목적

-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“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”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·조회 및 활용
-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, 지원효과 분석,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·관세청·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·활용

□ 수집·조회 및 활용 정보

- ① (지원이력정보)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,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
- ② (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)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·휴·폐업일,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,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,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
- ③ (인증정보) 기업의 인증·확인정보로서 신청일, 획득일, 유효기간 등

□ 수집·조회 및 활용 기관

-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(집행기관 포함),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

□ 동의 효력기간

-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
 - * 제공된 목적달성을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·이용
- 기업정보 수집 시점 :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
 - *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

※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,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.

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·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20 년 월 일
기업명 ○ ○ ○
대표자 ○ ○ ○ (인)

※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·조회·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,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.

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선정기준

신청기업명	
-------	--

검토항목	선정기준	적정	부적정
1. 중소 기업 여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신청기업이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해당 여부(해당 시 부적정) ※ 접수일 기준 최근 공정위 고시 자료와 대조 확인 필요 		
2. 중복 수혜 여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최근 2년간('24~'25년) 관세청, 농식품부, 산업부 및 지자체 예산 지원 FTA 컨설팅 수혜 여부 		
3. 체납 여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최근 2년간 관세 또는 국세를 체납하였는지 여부 ※ 접수일 기준 최근 체납 여부 확인(체납 있는 경우 부적정) 		
4. FTA 활용 기업 여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최근 3년간('23~'25년) FTA 체약상대국에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여 수출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※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여 국내공급(로컬수출)한 간접수출 포함 		
※ 우선순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미 수출기업 ※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중소기업 		1순위 ()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세관별 자체 선정기준 ※ 소상공인 우선 지원 등 		2순위 ()

※ 부적정 항목이 한 개라도 해당 시에는 컨설팅 불가

검토 결과 : 可, 否

실무 검토자 : (인)

검토 책임자 : (인)

[붙임4] 컨설턴트 배정기준

컨설턴트 배정 기준

- (원칙) 검증 컨설팅 신청 시 관세청 FTA포털에 게시된 컨설턴트 인력풀 중 기업이 컨설턴트를 지정
- (예외) 기업이 컨설턴트를 지정하지 않거나, 지정한 컨설턴트가 대상 기업에게 검증 대응 컨설팅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컨설턴트를 배정

우선순위	컨설턴트 배정기준
1순위	• 기업 소재지에 근접, 전년도에 공익관세사로 활동, 원산지관리사 자격 보유, 업체 미배정 컨설턴트
2순위	• 기업 소재지에 근접, 전년도에 공익관세사로 활동, 업체 미배정 컨설턴트
3순위	• 기업 소재지에 근접, 원산지관리사 자격 보유, 업체 미배정 컨설턴트
4순위	• 기업 소재지에 근접, 업체 미배정 컨설턴트

[붙임5] 컨설팅 기업수 배정기준

컨설팅 기업수 배정 기준

- (원칙) 사업기간 내 컨설턴트 당 최대 5개 기업 배정
- (예외) 다음 기준에 따라 최대 2개 범위에서 기업수를 가감하여 배정
 1. 전년도 컨설팅 평가결과 최하위 등급으로서, 평가위원회의 컨설팅 기업수 제한 요청이 있는 경우: 1개 또는 2개 축소
 2. 공익관세사로서 전년도 활동 실적이 우수한 경우: 1개 또는 2개 증가
 3. 원산지관리사 자격을 보유한 경우: 1개 증가
 4. 전년도 3개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수행하고 컨설팅 평가 결과 모두 최상위 등급을 받은 경우 : 1개 증가

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선정 통보서

귀사(하)는 관세청에서 시행하는 「0000년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」의 대상으로 선정되었음을 통보하오니,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한 후 사업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컨설팅 대상기업

상호	담당자 성명	주 소	연락처	
			사무실	휴대폰

컨설팅 비용 지급 (사업 종료 후)

자부담률	성 명	은행명	계좌번호
_____ %			

* (자부담률) 전년도 매출액 500억원 이하는 무료, 1,000억원 이하 20%, 1,500억원 이하 30%

(자부담액) 컨설팅 완료 후 컨설팅의 성과, 만족도 등 수행결과에 따라 컨설팅 비용이 결정되고, 대상기업은 컨설팅 비용 중 자부담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컨설턴트에게 지급 (최대 60만원)

컨설턴트

상호	관세사 성명	관세사 자격증 번호	연락처	
			사무실	휴대폰

컨설팅 유의사항

- 컨설팅을 위해 관세사가 자료 준비 및 정보 제공을 요청할 경우 대상 기업은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세관직원이 현장 방문 또는 온라인 영상시스템을 이용한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 대상기업과 관세사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관세사는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일체의 영업활동과 자부담 외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, 컨설팅 과정에 취득한 기업·영업정보 등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합니다. 기업에서는 이에 반하는 사례가 있는 경우 관세청(042-000-0000)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○ ○ 세 관 장

컨설턴트 재배정 통보서

귀사(하)는 관세청에서 시행하는 「0000년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」의 대상기업으로 선정되어 컨설턴트가 배정되었으나, 배정된 컨설턴트가 컨설팅을 수행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다른 컨설턴트를 재배정하여 통보하오니, 아래 내용을 확인한 후 사업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재배정) 컨설턴트

상호	관세사 성명	관세사 자격증 번호	연락처	
			사무실	휴대폰

컨설팅 유의사항

- 컨설팅을 위해 관세사가 자료 준비 및 정보 제공을 요청할 경우 대상 기업은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세관직원이 현장 방문 또는 온라인 영상시스템을 이용한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 대상기업과 관세사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관세사는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일체의 영업활동과 자부담 외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, 컨설팅 과정에 취득한 기업·영업정보 등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합니다. 기업에서는 이에 반하는 사례가 있는 경우 관세청(042-000-0000)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○ ○ 세 관 장

컨설팅 착수 보고

○ 기업명:

○ 기업 배정일:

○ 컨설팅 기간:

○ 컨설팅 내용:

○ 관세사:

위와 같이 컨설팅에 착수할 것을 보고함

년 월 일 (서명 또는 인)

컨설팅 유의사항 확인서(컨설턴트용)

컨설팅 유의사항

○ 컨설팅 기한 준수

컨설턴트는 정해진 기한 내에 컨설팅을 완료하고, 결과보고서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○ 성실활동 의무

컨설턴트는 성실히 컨설팅에 임하여야 하며 평일 근무시간에 1개의 기업에 한해 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.

○ 비밀유지 의무

컨설턴트는 컨설팅 중 취득한 기업의 영업정보 및 비밀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.

○ 진행경과 통보 의무

컨설턴트는 컨설팅 중 중단·연기 등의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세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.

○ 영업활동 금지

컨설턴트는 컨설팅 기업을 대상으로 일체의 영업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.

○ 부당이득 취득 금지

컨설턴트는 컨설팅과 관련하여 별도의 비용을 컨설팅 기업에게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.

※ 1. 이 서류는 작성 후 사본을 보관하고 원본은 세관에 제출

2. 컨설턴트가 제출한 완료보고서 또는 증빙자료 등이 허위 또는 부실로 작성된 경우에는 지급되었던 컨설팅 대금이 환수될 수 있음

위 내용을 확인했으며 컨설팅 유의사항 위반에 따른 모든 책임은 컨설턴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.

대상기업:

관세사:

소속사무소:

작성일자: 년 월 일 (서명 또는 인)

[붙임9] 보안각서

보안각서

관세사명	생년월일	소속회사	서명

상기인은 0000년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취득한 제반사항에 대해서 이 사업의 전후를 막론하고 기밀을 엄수할 것과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민·형사상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○○ 세관장 귀하

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컨설팅 완료보고서

관세청 주관 『00년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』
대상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
같이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컨설팅 기관 OO관세사 홍길동
지원기업 OOOO 대표 홍사장

관세청장 귀하

- 붙임 1.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컨설팅 완료보고서(요약) 1부.
2.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컨설팅 완료보고서 1부.
3. 실적별 증빙서류 각 1부.
4. 대금 지급용 은행통장 사본, 신분증 사본 각 1부.

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컨설팅 완료보고서 [요약]

대상 기업	상호		사업자등록번호	
	주소		대표자 성명	
관세사	소속		사업자등록번호	
	관세사 성명		연락처	(사무실) (휴대폰)
	대금지급 계좌	()은행, 계좌번호(), 계좌주() * 계좌주가 컨설턴트와 일치해야 함		
컨설팅 행 내 역	컨설팅 항목 (해당항목 ✓ 표시)	<input type="checkbox"/> 품목분류, 원산지결정기준, 제조공정확인, 재료명세서 작성		
		<input type="checkbox"/> 기초 데이터 생성 · 입력(구매처/물품재료/거래명세서/원가관리 등)		
		<input type="checkbox"/> 판정관리/서류관리		
		<input type="checkbox"/> 원산지증명서/원산지확인서 등 신청 · 발급 · 유통		
		<input type="checkbox"/> FTA-PASS를 통한 원산지관리 활용지원		
		<input type="checkbox"/> 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/갱신/사후관리/자율점검 등		
		<input type="checkbox"/> 원산지 검증절차, 서류보관 지원 등		
	<input type="checkbox"/> 컨설팅 종료 후 대상기업 총평			
컨설팅 주요내용	판정 · 활용실적	<input type="checkbox"/> 有(원산지판정, 서류발급 · 유통) <input type="checkbox"/> 無		
	1일차(월 일)	예시) FTA-PASS 교육, 회원가입 등		
	2일차(월 일)	예시) 원산지판정을 위한 데이터 입력 등		
	3일차(월 일)			
	4일차(월 일)			
	5일차(월 일)			
	6일차(월 일)			
	7일차(월 일)			
소계	총 ()일 / 1일 1기업 기준			
※ 증빙자료 (FTA-PASS 시스템 자료 첨부)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작성예시) 수출품목별 원산지증명서 사본(수출면장사본) 원산지확인서 사본(거래처 발급요청서 또는 매일 사본)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사본 등 			

컨설팅 결과보고서의 내용 및 관련 증빙자료가 모두 사실임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대상기업(대표): (인) 대상기업(담당): (인) 관세사: (인)

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컨설팅 완료보고서

1. 기업개요

회사명: (주)○○○(대표자:)

- 소재지:

사업자등록번호:

사업장

구 분		비 고
국 내	본사:	-
	○○공장:	○○ 등 생산
	○○공장:	○○ 생산

주요 수출품

연번	품명	모델	HS 6단위	주요 수출국	활용 협정
1	0000	000	0000.00		
▶ 8512.20호 : 기타의 조명용 또는 시각신호용 기구					
※ 8512호 : 전기식의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기기(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)·원드스크린와이파이상기 및 제무기(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의 것에 한한다)					
2	0000	000	0000.00		
▶ 0000.00호:					
※ 0000호:					
3	0000	000	0000.00		
▶ 0000.00호:					
※ 0000호:					

2. 컨설팅 기대효과

- 컨설팅 후 기대효과를 정성·정량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기재

(※ 원산지증명서(확인서) 발급 금액은 필수 기재)

(작성예시)

1. 컨설팅 이후 C/O발급금액, 원산지확인서 발급금액
2. 수출증가
3. 원산지인증수출자 신규지정 / 갱신/자율점검
4.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 인증 여부
5. 원산지 자료보관체계 정비

3. 애로 및 건의사항

- 기업이나 관세사의 애로·건의사항, FTA-PASS 개선사항, 제도개선 사항 등을 기재

4. 관세사 총평

보고자

관세사 ○○○

모의검증 체크리스트

Section I 업체 현황

수출자 현황					
업체명			사업자등록번호		
대표자			업종/업태		
주소	(사업장)				
	(공장 1)				
	(공장 2)				
종업원	(총원) _____명 (관리직) _____명 (기술직) _____명 (생산직) _____명 (행정직) _____명 (기타) _____명				
원산지업무 인력	<input type="checkbox"/> 관세사 활용(○○관세사), <input type="checkbox"/> 원산지관리사 보유(홍길동), <input type="checkbox"/> 자체직원 활용(홍길동, 원산지 업무경력 0년)				
주요 수출물품	연번	수출물품의 품명	HS Code	단위	중량
※ 금액 : FOB, EXW 등 협정에서 정하는 가격 (단, 한-EU FTA에서는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수출자가 생산자로부터 공급 받은 가격) ※ 관세율표 제50류 ~ 제63류 제품은 단위 중량도 함께 기재하여 주십시오.					
주요장비 (섬유·의류 업종에 한정)	설비의 종류	대수	설비의 종류	대수	
담당자	(전화번호)		(이메일)		
생산자 현황(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)					
업체명			사업자등록번호		
대표자			업종/업태		
주소	(사업장)				
	(공장 1)				
	(공장 2)				
종업원	(총원) _____명 (관리직) _____명 (기술직) _____명 (생산직) _____명 (행정직) _____명 (기타) _____명				

- 주」 1. 체크리스트의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.
 2. 이 표의 "HS코드"란에는 가능한 한 HS 6단위(한-미 FTA의 경우 8단위) 이상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생산자 현황(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)				
원산지업무 인력	<input type="checkbox"/> 관세사 활용(○○관세사), <input type="checkbox"/> 자체직원 활용(홍길동, 원산지 업무경력 0년) <input type="checkbox"/> 원산지관리사 보유(홍길동),			
주요장비 (섬유·의류 업종에 한정)	설비의 종류	대수	설비의 종류	대수
담당자	(전화번호) (이메일)			

Section II 원산지결정 전제요건 점검

적용협정	<input type="checkbox"/> 칠레 <input type="checkbox"/> 싱가포르 <input type="checkbox"/> EFTA <input type="checkbox"/> 아세안 <input type="checkbox"/> 인도 <input type="checkbox"/> EU <input type="checkbox"/> 페루 <input type="checkbox"/> 미국 <input type="checkbox"/> 튀르키예 <input type="checkbox"/> 호주 <input type="checkbox"/> 캐나다 <input type="checkbox"/> 중국 <input type="checkbox"/> 뉴질랜드 <input type="checkbox"/> 베트남 <input type="checkbox"/> 영국 <input type="checkbox"/> 콜롬비아 <input type="checkbox"/> RCEP <input type="checkbox"/> 캄보디아 <input type="checkbox"/> 이스라엘 <input type="checkbox"/> 인도네시아 <input type="checkbox"/> 필리핀 <input type="checkbox"/> 중미
------	--

1. 품목분류

1-1. 귀사가 수출한 물품은 협정에서 정한 특혜세율 적용대상품목입니까?	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 <input type="checkbox"/> 세관확인요청
1-2. 귀사가 수출한 물품이 협정에서 정한 특혜세율 적용대상품목이라면 협정상 적용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십니까?	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
1-3. 귀사는 수출물품의 품목분류(HS코드)를 어떻게 결정하고 있습니까?	<input type="checkbox"/> 자체 결정 <input type="checkbox"/> 관세사 자문 <input type="checkbox"/> 관세청 사전회시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)
1-4. 귀사는 수출물품의 품목분류 결정에 근거가 되는 자료(용도설명서, 제조 공정도, BOM 등)를 보관하고 있습니까?	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 <input type="checkbox"/> 세관확인요청

2. 원산지증명서 발급

2-1. (기관발급: 한-싱가포르, 한-아세안, 한-인도, 한-중국, 한-베트남, RCEP 등) 귀사는 수출한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협정 및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발급받았습니까?	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
2-2. (자율발급: 한-칠레, 한-EFTA, 한-EU, 한-페루, 한-미국, 한-튀르키예, 한-호주, 한-캐나다, 한-뉴질랜드, 한-콜롬비아, 한-중미, 한-영, RCEP, 한-중미 등) 귀사는 수출한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협정 및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발급하였습니까?	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 <input type="checkbox"/> 발급사실 없음(한-미 FTA에 있어 미수입자가 자율발급)
2-2-1. 만약, 그렇다면 「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4조(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자율증명절차 등) 제2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기재·관리하고 있습니까?	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
2-3. (공통) 수출물품과 원산지증명서상 물품의 동일성에 대해 입증할 수 있습니까?	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 <input type="checkbox"/> 세관확인요청

3. 서류보관

3-1. (수출자인 경우) 귀사는 「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다음 서류를 5년간 보관하고 있습니까?

<수출자> (FTA관세특례법 §15, 같은 법 시행령 §10-①-2)

수출자는 아래 서류를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함.

- ① 원산지증명서(전자문서 포함) 및 발급신청서류 사본
- ② 수출신고필증
- ③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(수출자 명의로 수입 신고한 경우에 한함)
- ④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
- ⑤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관련 증빙서류
- ⑥ 원가계산서·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
- ⑦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·재고관리대장
- ⑧ 생산자(재료생산자 포함)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 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수출자에게 제공한 서류

예 아니오 세관확인요청

일부만 보관하는 경우에는 해당 번호를 기재
()

3-2. (생산자인 경우) 귀사는 「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다음 서류를 5년간 보관하고 있습니까?

<생산자> (FTA관세특례법 §15, 같은 법 시행령 §10-①-3)

생산자는 아래 서류를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함.

- ① 수출자 또는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당해 물품의 원산지의 증명을 위하여 작성·제공한 서류
- ② 수출자와의 물품공급계약서
- ③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(생산자 명의로 수입 신고한 경우에 한함)
- ④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관련 증빙서류
- ⑤ 원가계산서·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
- ⑥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·재고관리대장
- ⑦ 재료생산자가 해당 재료의 원산지 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생산자에게 제공한 서류

예 아니오 세관확인요청

일부만 보관하는 경우에는 해당 번호를 기재
()

3-3. (수출자인 경우) 수출물품의 국내 생산자가 따로 있는 경우 해당 생산자가 작성한 원산지확인서 또는 원산지소명서를 5년간 보관하고 있습니까?

예 아니오 세관확인요청

4. 원산지 관리 시스템

4-1. 귀사는 원산지 관리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까?

예 아니오 세관확인요청

4-2. 만약 원산지 관리 시스템을 보유하고 계시면 원산지 관리 시스템의 종류(예: 관세청 FTA-PASS)를 기재하여 주십시오.

Section III 원산지 결정기준 점검

◇ 공통사항(Part 1)을 먼저 점검한 후, 개별사항(Part 2~5) 중 해당되는 항목을 점검하여 주십시오.

공통 사항		Part 1 질문으로 이동하십시오.
개별 사항	완전생산 기준	Part 2 질문으로 이동하십시오.
	세변변경 기준	Part 3 질문으로 이동하십시오.
	부가가치 기준	Part 4 질문으로 이동하십시오.
	가공공정 기준	Part 5 질문으로 이동하십시오.
	세트상품 기준	Part 6 질문으로 이동하십시오.

선택기준의 경우 해당 기준 중 어느 하나만을 충족하면 되고,
조합기준의 경우 해당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.

▶ PART 1. 불인정공정(공통사항)

4-1. 귀사는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수출물품과 관련된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까?	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(4-2이동)
4-1-1. 해당 수출물품은 협정 및 법률에서 정한 불인정공정 이상의 공정을 수행 하였습니까?	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 <input type="checkbox"/> 세관확인요청
4-1-2. 불인정공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를 입증할 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까?	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 <input type="checkbox"/> 세관확인요청
4-1-3. 해당 수출물품의 생산과 관련된 제조공정을 아래에 간략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.	
4-2.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수출물품의 국내 생산자가 따로 있는 경우 해당 생산자는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까?	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
4-2-1. 해당 수출물품은 협정 및 법률에서 정한 불인정공정 이상의 공정을 수행 하였습니까?	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 <input type="checkbox"/> 세관확인요청
4-2-2. 불인정공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를 입증할 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까?	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 <input type="checkbox"/> 세관확인요청
4-2-3. 해당 수출물품의 생산과 관련된 제조공정을 아래에 간략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.	

▶ PART 2. 완전생산기준

5-1. 귀사는 특혜관세 적용 수출물품에 대하여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였습니까?	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
5-1. 해당 수출물품은 협정 또는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완전 생산 또는 완전 획득하였습니까?	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 <input type="checkbox"/> 세관확인요청
5-2. 해당 수출물품이 완전 생산 또는 완전 획득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까?	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 <input type="checkbox"/> 세관확인요청

▶ PART 3. 세번변경기준

6-1. 귀사는 특혜관세 적용 수출물품에 대하여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였습니까?	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-2. 제품 1단위(재료생산자인 경우 납품단위)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에 대하여 아래에 간략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연번</th> <th>원재료명</th> <th>HS코드</th> <th>원산지</th> <th>공급자명</th> <th>주소 및 연락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<td> </td><td> </td><td> </td><td> </td><td> </td><td> </td></tr> </tbody> </table>						연번	원재료명	HS코드	원산지	공급자명	주소 및 연락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번	원재료명	HS코드	원산지	공급자명	주소 및 연락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-3. 귀사의 수출물품은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였습니까? ※ 역외산(제3국산) 원재료의 HS코드와 완성품의 HS코드가 다를 경우 충족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 <input type="checkbox"/> 세관확인요청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-4. 귀사는 원재료의 품목분류(HS코드)를 어떻게 결정하고 있습니까?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input type="checkbox"/> 자체결정 <input type="checkbox"/> 관세사 자문 <input type="checkbox"/> 관세청 사전회시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(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-5. 세번변경기준을 불충족한 경우 미소(최소)기준을 사용하였습니까?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 <input type="checkbox"/> 세관확인요청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-5-1 미소(최소)기준을 사용한 경우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였습니까?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 <input type="checkbox"/> 세관확인요청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-5-2 미소(최소)기준에 적용된 원재료에 대하여 아래에 간략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연번	원재료명	HS코드	원산지	소요량	중량	단가	금액
계							

※ 완제품 수출물품의 연번을 참조해서 해당 수출물품의 원재료에 대한 BOM을 작성하여 주십시오.

※ 관세율표 제50류 ~ 제63류 제품은 중량과 단가를 함께 기재하여 주십시오.

※ 비원산지 재료비는 국내거래가격(단, 수입 시는 CIF 가격)을 기준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.

6-6. 역외산(제3국산) 원재료 중 완성품과 세번이 동일한 재료에 대하여 아래에 간략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.

연번	원재료명	HS코드	원산지	단가	제품 1단위(FOB 또는 EXW 가격)
계					

▶ PART 4. 부가가치기준

7-1. 귀사는 특혜관세 적용 수출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였습니까? 예 아니오

7-2. 제품 1단위(재료생산자인 경우 납품단위)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에 대하여 아래에 간략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.

[주요 수출물품의 품명 :]

연번	원재료명	HS코드	원산지	소요량	중량	단가	금액
계							

※ 금액 : FOB, EXW 등 협정이 정하는 가격

※ 주요 수출물품은 Section I 업체 현황의 주요물품의 품명을 기재(품목별로 작성)하여 주십시오.

※ 관세율표 제50류 ~ 제63류 제품은 중량과 단가를 기재하여 주십시오.

※ 비원산지 재료비는 국내거래가격(단, 수입시는 CIF 가격)을 기준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.

비원산지재료비 합계:

원산지재료비 합계:

물품의 가격:

부가가치비율(RVC): %

7-3. 원재료의 원산지를 어떤 자료로 입증하고 있습니까?	<input type="checkbox"/> 세금계산서 <input type="checkbox"/> 거래계약서 <input type="checkbox"/> 원산지확인서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()
7-4. 누적공정기준을 사용하였습니까?	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 <input type="checkbox"/> 세관확인요청
7-4-1. 누적공정기준을 적용 시 역내산 원재료의 C/O를 확보하고 있습니까?	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 <input type="checkbox"/> 세관확인요청
7-5. 원재료 중 대체가능물품을 사용하고 있습니까?	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 <input type="checkbox"/> 세관확인요청
7-5-1. 대체가능물품에 대한 재고관리기법으로 어떤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까?	<input type="checkbox"/> 개별법 <input type="checkbox"/> 선입선출법 <input type="checkbox"/> 후입선출법 <input type="checkbox"/> 평균법 <input type="checkbox"/> 세관확인요청
7-5-2. 회계연도 중 동일 재고관리기법을 적용하고 계십니까?	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

▶ PART 5. 가공공정기준

8-1 귀사는 특혜관세 적용 수출물품에 대하여 가공공정기준을 적용하였습니까?	<input type="checkbox"/> 예	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
8-2. 해당 물품의 생산과 관련된 제조공정을 아래에 간략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.		

▶ PART 6. 세트물품기준

9-1 귀사의 특혜관세 적용 수출물품이 세트물품입니까?	<input type="checkbox"/> 예	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9-2. 해당 세트물품의 정보를 아래에 간략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><thead><tr><th>연번</th><th>상품명</th><th>HS코드</th><th>원산지</th><th>금액</th></tr></thead><tbody><tr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<tr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<tr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<tr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<tr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<tr><td colspan="4">계</td><td></td></tr></tbody></table>			연번	상품명	HS코드	원산지	금액																										계				
연번	상품명	HS코드	원산지	금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Section IV 컨설팅 세부내용(여러 페이지 기재 가능)

10-1 컨설팅 전 기업의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비한 원산지관리 실태를 기재합니다.

10-2 컨설턴트의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비한 컨설팅 내역을 기재합니다.

10-3 컨설팅 결과 원산지관리 개선된 사항 또는 컨설턴트의 총평(원산지규정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)을 기재합니다.

Section V 기업 담당자 및 관세사 서명

위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에 근거에 작성된 것임을 확인합니다.

담당자 : (소속)

(직책)

(성명)

(서명)

관세사 : (소속)

(직책)

(성명)

(서명)

(업체명)

모의검증 보고서

※ 실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기초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
I. 모의검증 대상

대상물품 :

C/O 번호 (발급일)	품명	HS	관세율	
			MFN	FTA

국내 수출자

업체명	대표자

국내 생산자

업체명	대표자

해외 수입자

국 가	업체명

II. 모의검증 결과

품목분류 : 적정 / 부적정

- 검토의견

원산지 결정기준 : 충족 / 불충족

일반기준 충족여부 확인

* 완전생산여부, 역내가공, 충분가공 및 직접운송원칙 충족여부

세번변경기준 및 가공공정기준 충족여부 확인

미소기준 대상 원부자재 파악, 적정성 확인

부가가치결정기준 충족여부 파악, 적정성 확인

- 검토의견

원산지 증빙서류 보관 : 적정 / 부적정

근거규정 (FTA 특례법 시행령 제10조)

- FTA 특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수출자는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서류*를 5년동안 보관해야함

* 원산지증명서류, 수출신고필증, 수출계약서, 재료 생산·구입서류, 원재료 내역 및 공정명세서, 제품 및 재료 출납 및 재고관리대장 등

- 검토의견

기타 원산지 관리 현황(CO 발급·인증수출자 등) : 적정 / 부적정

- 검토의견

모의검증 총평

-

[붙임10-4] 교육일지(예시)

* 참석자 서명을 반드시 포함할 것

교육 진행일지

1회	일자	년 월 일 (: ~ :)				
	주요 내용					
	참석자	(성명)	(서명)			
2회	일자	년 월 일 (: ~ :)				
	주요 내용					
	참석자	(성명)	(서명)			
3회	일자	년 월 일 (: ~ :)				
	주요 내용					
	참석자	(성명)	(서명)			
4회	일자	년 월 일 (: ~ :)				
	주요 내용					
	참석자	(성명)	(서명)			

붙임 : 교육자료

[붙임11] 컨설팅 평가기준

평가방법

- (평가항목·배점) 컨설팅 성과 80점, 고객 만족도 20점, 합산 100점
을 기준으로 컨설팅 평가

부문	평가항목	세부점수					최대 배점
①성과 (80점)	▶ 원산지검증 대응매뉴얼 작성	미작성 0점	미흡 6점	보통 10점	우수 15점	매우 우수 20점	20점
	▶ 모의검증 체크리스트 작성	미작성 0점	미흡 6점	보통 10점	우수 15점	매우 우수 20점	20점
	▶ 모의검증 보고서 작성	미작성 0점	미흡 4점	보통 6점	우수 8점	매우 우수 10점	10점
		* 모의검증 보고서는 2장 이상 작성할 것					
	▶ 교육일지 작성	미작성 0점	미흡 4점	보통 6점	우수 8점	매우 우수 10점	10점
		* 교육일지에 반드시 참석자 서명할 것					
		미작성 0점	미흡 6점	보통 9점	우수 12점	매우 우수 15점	
	▶ FTA-PASS를 활용한 표준질의서 작성	표준질의서 항목		원산지서류 목록			
②고객 (20점)		1. 거래자 정보 2. 일반사항(수출정보) 3. 원산지결정기준		1. 제조공정설명서 사본 2. 원재료명세서(BOM) 사본 3. 원산지증명서 사본 4. 원산지소명서 사본 5. 원산지확인서류 사본			
	▶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 또는 자율점검 실시	품목별		업체별			
		인증수출자 신규	물품 또는 협정 추가	자율점검 실시	인증수출자 신규	자율점검 실시	
		5점	3점	3점	5점	3점	5점
③가점 (10점)	▶ 컨설팅 고객 만족도	50점 이상 12점	60점 이상 14점	70점 이상 16점	80점 이상 18점	90점 이상 20점	20점

- (가산점) 원산지증명서 수정통보 실적, 수출신고서상 원산지증명서
발급 여부를 수정한 실적에 대해 최대 10점 가점 부여

부문	평가항목	세부점수					최대 배점
③가점 (10점)	▶ 원산지증명서 수정통보 실적(수정통보서 기준)	1건 이상 1점	3건 이상 2점	5건 이상 3점	7건 이상 4점	10건 이상 5점	5점
	▶ 수출신고서상 원산지증명서 발급 여부 수정 실적	1건 이상 1점	3건 이상 2점	5건 이상 3점	7건 이상 4점	10건 이상 5점	5점

※ 검증 컨설팅 성과는 완료보고서 제출시점까지의 실적만 인정되며,
증빙자료는 완료보고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함

□ 평가등급 부여

- (등급 산정 방법) '평가점수'와 '컨설팅 일수'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해당 등급 부여

평가등급	F	E	D	C	B	A
평가점수	50점 미만	50점 이상	60점 이상	70점 이상	80점 이상	90점 이상
컨설팅 일수	-	2일	3일	4일	5일	6일 이상
평가금액	-	40만원	80만원	120만원	160만원	200만원

- 두 요건의 등급이 상이한 경우 낮은 등급 적용

(예시: 평가점수가 85점이고 컨설팅 일수가 4일인 경우 C등급 적용)

○ (기한 도과 감점)

- 컨설팅 착수보고 제출기한 미준수 시 평가점수 5점 감점 적용
- 컨설팅 완료보고서 제출기한 미준수 시 최종 등급에서 한 단계 낮은 등급 적용. 다만,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고 10일이 경과한 경우 최하위 등급 적용

컨설팅 대금이 지급된 후 컨설턴트의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지급된 대금을 환수할 수 있음